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전문위원 강동역

I. 손괴범죄 개관

가. 개념

-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형법상 손괴죄에는 재물손괴, 공익건조물파괴, 경계침범의 세 가지 독립된 구성요건이 포함되어 있음

나. 보호법익

- 재물손괴죄는 영득의 의사 없이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보호법익은 소유권의 이용가치 또는 기능으로서의 소유권
- 공익건조물파괴죄의 보호법익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의 유지에 대한 일반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임
- 경계침범죄의 보호법익은 토지에 대한 권리와 중요한 관계를 가진 토지경계의 명확성

다. 유사 범죄유형과의 비교

▣ 절도죄 등 재산범죄

-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절도죄 등과 유사하나, 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서 절도죄 등 영득죄와 구별됨

▣ 폭력범죄

- 오히려 재물손괴죄는 영득의사 없이 재물에 대한 손괴의 방법으로 폭력행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행위자의 폭력성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폭행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일반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은 일반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와, 중손괴죄의 법정형은 중상해죄와,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사죄의 법정형은 상해치사죄와,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손괴, 상습·특수·누범손괴, 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죄의 법정형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폭행/협박, 상습·특수폭행/협박, 상습특수·누범특수폭행/협박)죄와 유사·동일함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1. 손괴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가. 형법상의 손괴죄

법률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형법	§ 366	재물손괴	3년 ↓, 700만 ↓
	§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 ↓, 2,000만 ↓
	§ 368①	중손괴	↑ 1년~10년 ↓
	§ 368② 전단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 1년
	§ 368② 후단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사	↑ 3년
	§ 369①	특수재물손괴	5년 ↓, 1,000만 ↓
	§ 369②	특수공익건조물파괴	↑ 1년, 2,000만 ↓
	§ 370	경계침범	3년 ↓, 500만 ↓
	§ 371	366, 367, 369조의 미수범 처벌	

나. 특별법상의 손괴죄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2조 제3항, 제3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1호, 제3조 제4항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제2조 제2항	공동재물손괴등	4년6월 ↓, 1,050만 ↓
제2조 제1항 제1호	상습재물손괴등	↑ 1년
제2조 제3항	누범재물손괴등	
제3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등	
제3조 제3항 제1호	상습 · 특수재물손괴등	↑ 2년
제3조 제4항	누범 · 특수재물손괴등	

- ▣ 문화재보호법 - 제92조 제1항, 제92조 제2항, 제92조 제4항, 제93조 제1항, 제93조 제2항 전단, 제93조 제2항 후단, 제94조¹⁾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제92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 손상등 (절취 제외)	↑ 3년
제92조 제2항	i. 제1항 외 지정문화재 손상등 (절취 제외) ii. 일반동산문화재 손상등 (절취 제외)	↑ 2년
제92조 제4항	제1, 2항 이전 손상 행위 미처벌 은닉	↑ 3년, ↑ 2년
제93조 제1항	집단 · 흉기등 손상등	각 ↑ 3년~45년 ↓, ↑ 2년~45년 ↓
제93조 제2항 전단	집단 · 흉기등 손상등치상	↑ 5년, 무기
제93조 제2항 후단	집단 · 흉기등 손상등치사	↑ 5년, 무기, 사형
제94조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	형법 제367조 등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1/2 가중

1)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4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3항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제74조 제1항	v. 산림 입목 손상 vi. 가로수 손상	5년 ↓, 1,500만 ↓
제74조 제3항	상습 산림 입목 손상, 상습 가로수 손상	10년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조성법 제73조 제1항, 제2항 및 74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 or 산림 훼손면적이 5만㎡ 이상	무기, 5년 ↑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조성법 제73조 제1항, 제2항 및 74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or 산림 훼손면적이 5천㎡ 이상 5만㎡ 미만	3년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제35조 제3항, 제36조의2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제35조 제3항	지정산림문화자산 손상 등	5년 ↓, 2,000만 ↓
제36조의2	숲길 훼손, 건조물·농작물 등 손괴	3년 ↓, 700만 ↓

▣ 기타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93조(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죄를 범하면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 형법상 ‘손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다른 범죄로는, 소요(형법 제115조), 다중불해산(형법 제116조), 특수도주(형법 제146조), 사체손괴(형법 제161조), 진화방해(형법 제169조), 가스전기등공급방해(형법 제173조), 방수방해(형법 제180조), 일반교통방해(형법 제185조), 기차, 선박등교통방해(형법 제186조), 수도불통(형법 제195조), 컴퓨터등업무방해(형법 제314조 2항), 권리행사방해(형법 제323조),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 등이 있음
- 그 밖에 ‘손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특별법들이 있음
 - 고속국도법(제12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8조), 도시가스사업법(제48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39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원자력안전법(제113조), 항공법(제156조, 제160조), 항공보안법(제39조) 등

2. 양형기준 설정범위

가. 형법상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포함

- ▣ 형법상의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재물손괴, 상습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누범재물손괴, 상습특수재물손괴, 누범특수재물손괴,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제3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1호, 제3조 제4항)
- 손괴범죄의 기본 구성요건 및 가중요건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나. 형법상 공익건조물파괴죄,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 포함

- 형법상 공익건조물파괴죄,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의 경우 보호법익이 일반적인 재물손괴죄와 다른 점, 실제 사례가 드문 점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공익건조물파괴죄는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가중적 구성요건인 중손괴, 손괴치사상의 기본범죄인 점, 공익건조물 이용 및 유지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다. 형법상 미수범죄 - 제외

- 살인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군에서 미수범의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음
- 손괴죄의 양형기준 설정에 있어 미수범을 달리 취급할 필요성 없음

라. 형법상 경계침범죄 - 제외

▣ 적극설

-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 편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
- 행위태양이 재물손괴죄와 유사하며, 징역형의 법정형(3년 이하 징역)이 재물손괴죄와 동일

▣ 소극설

- 보호법익이 ‘토지경계의 명확성’으로 소유권의 이용가치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재물손괴죄와 상이

- 실무례가 거의 없으며, 국민적 관심도 낮음

▣ 검토

- 경계침범죄의 경우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유사범죄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으므로, 설정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마. 형법상 중손괴죄,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죄,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사죄 - 포함

- 형법상 중손괴죄,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죄,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사죄의 경우 실제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손괴죄가 폭력범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손괴죄에 수반하여 생명·신체가 침해되거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 존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시킴이 타당

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손상 등 죄 - 포함

-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손상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실제로 적지 않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절도죄, 방화죄의 경우에도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절도, 문화재 방화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 문화재특수손상, 특수손상치사상의 경우도 양형기준 설정 대상인 특수손괴,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사상과 행위태양이 유사하므로

로 통일적인 기준 마련 필요

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²⁾ 및 특가법상의 산림입목·가로수 손상 - 제외

■ 산림자원조성법 제74조 제1항 제5호, 제6호(산림입목·가로수 손상), 같은 법 제74조 제3항(상습 산림입목·가로수 손상), 특가법상 산림입목·가로수 손상(특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적극설

-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산림입목 등을 손상하는 범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절도죄의 경우 같은 법 위반에 대하여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으로, 방화죄의 경우도 같은 법 위반에 대하여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유형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한 바 있음

■ 소극설

- 산림자원조성법 제74조 제1항 제5호, 제6호(산림입목·가로수 손상)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사건이 간혹 있을 뿐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은 드물며, 같은 법 제74조 제3항(상습 산림입목·가로수 손상)으로 처벌되는 실무례도 찾아보기 어려움
- 또 산림자원조성법에 대해 특가법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산림자원조성법 제74조 제1항 제5호, 제6호(산림입목·가로수 손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를 한 경우(동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것임
- 그런데 무허가 입목벌채를 처벌하는 주된 취지는 행정적으로 산림자원의 보호와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형적 의미에서의 손괴죄와는 보호법익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위 범죄를 손괴죄

2) 이하 산림자원조성법이라 약칭

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검토

- 실무례가 없어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³⁾ - 제외

1) 지정산림 문화자산 손상 등 - 제외

■ 적극설

- 절도죄의 경우 같은 법 위반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
- 지정산림 문화자산에 대한 보호필요성 크며,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비교적 높음

■ 소극설

- 적용되는 실무례를 찾아 보기 어려움

■ 검토

- 실무례가 없어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2) 숲길 훼손 등 - 제외

■ 적극설

- 행위태양이 재물손괴죄와 유사하며, 징역형의 법정형(3년 이하 징역)이 재물손괴죄와 동일

■ 소극설

- 실무례가 거의 없으며, 국민적 관심도 낮음

3) 이하 산림문화휴양법이라 약칭

▣ 검토

-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낮으며, 실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유사 범죄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으므로, 설정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자. 형법과 특별법상 손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기타 범죄 - 제외

- 위 범죄들의 경우 손괴가 범죄수단으로 되어 있으나, 공공의 안전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손괴범죄 양형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

Ⅲ. 범죄유형 분류

1. 일반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이 공통되어야 함

2. 손괴죄의 속성

- 손괴죄는 손괴의 태양, 손괴의 대상, 피해의 종류, 결과 발생 정도 등이 중요한 양형인자가 될 수 있음
- 비록 보호법익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범죄인 절도죄 및 폭력범죄, 체포·감금범죄, 방화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3. 유사범죄의 유형분류 사례

1) 절도범죄 양형기준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물 등 절도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일반절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
3	대인절도	6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4	침입절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치가 높은 재산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 2유형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상습·누범절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습·누범절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공동상습·누범절도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7년

2) 폭력범죄 양형기준

▣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년	4월 - 1년6월	6월 - 2년
2	중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2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 폭행범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 8월	2월 - 10월	4월 - 1년
2	폭행치상	2월 - 1년6월	4월 - 2년	6월 - 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4	운전자 폭행치상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6	상습·누범·특수폭행	4월 - 1년2월	6월 - 1년10월	8월 - 2년4월
7	보복목적 폭행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 협박범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이하	2월 - 1년	4월 - 1년6월
2	운전자 협박치상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3	운전자 협박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4	상습·누범·특수협박	4월 - 1년	6월 - 1년6월	8월 - 2년
5	보복목적 협박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3) 체포·감금범죄 양형기준

▣ 일반적 기준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보복목적 체포·감금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3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6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상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사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4) 방화범죄 양형기준

▣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2	일반건조물 등 방화	1년-2년	1년6월-3년	2년6월-5년
3	일반물건방화	6월-1년	10월-2년	1년6월-4년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문화재 방화	2년6월-4년	3년-8년	6년-12년
2	산림 방화	3년-6년	5년-9년	8년-13년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5년	4년-7년	6년-11년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4년-9년	7년-13년	10년-17년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9년-13년	12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4. 손괴죄 양형자료조사 결과⁴⁾

가. 선고내역

4) 2009. 1. 1. ~ 2013. 12. 31. 선고된 징역형 사건 468건 분석

단위: 명, %

세부죄명			선고형		전체
			실형	집행유예	
손괴죄	재물손괴	수	54	121	175
		비율	30.9	69.1	100.0
	특수재물손괴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폭처법 (공동재물손괴등)	수	3	10	13
		비율	23.1	76.9	100.0
	폭처법 (상습재물손괴등)	수	6	5	11
		비율	54.5	45.5	100.0
	폭처법 (야간집단·흥기등손괴)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폭처법 (집단·흥기등손괴)	수	3	28	31
		비율	9.7	90.3	100.0
	폭처법 (집단·흥기등재물손괴등)	수	44	192	236
		비율	18.6	81.4	100.0

나.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6	18	24	30	36			42	
손 괴 죄	재물손괴	수	3	6	55	1	80	0	17	0	6	5	1	0	1	0	0	0	0	175	5.81	
		비율	1.7	3.4	31.4	0.6	45.7	0.0	9.7	0.0	3.4	2.9	0.6	0.0	0.6	0.0	0.0	0.0	0.0	100.0		
	특수재물손괴	수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4.00
		비율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폭처법 (공동재물손괴등)	수	0	0	5	0	7	0	0	0	0	1	0	0	0	0	0	0	0	0	13	5.69
		비율	0.0	0.0	38.5	0.0	53.8	0.0	0.0	0.0	0.0	7.7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폭처법 (상습재물손괴등)	수	0	0	0	0	5	0	4	0	0	1	1	0	0	0	0	0	0	0	11	8.00
		비율	0.0	0.0	0.0	0.0	45.5	0.0	36.4	0.0	0.0	9.1	9.1	0.0	0.0	0.0	0.0	0.0	0.0	0.0	100.0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6	18	24	30	36	42		
폭처법(야간집단· 흥기등손괴)	수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	6.00
	비율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폭처법 (집단·흥기등손괴)	수	0	0	0	0	19	0	6	0	1	3	0	0	2	0	0	0	0	31	7.87
	비율	0.0	0.0	0.0	0.0	61.3	0.0	19.4	0.0	3.2	9.7	0.0	0.0	6.5	0.0	0.0	0.0	0.0	100.0	
폭처법(집단·흥기 등재물손괴등)	수	0	0	4	0	131	0	60	1	12	27	0	0	1	0	0	0	0	236	7.43
	비율	0.0	0.0	1.7	0.0	55.5	0.0	25.4	0.4	5.1	11.4	0.0	0.0	0.4	0.0	0.0	0.0	0.0	100.0	

5. 유형분류 방안

가. 대유형 분류

1) 일반적 기준/ 상습·누범·특수손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3개 대유형 분류 (1안)

▣ 일반적 기준

- 특별재산 여부를 별도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이를 일반적 기준에 모두 포함시켜 대유형 분류를 보다 단순화함
- 형법상 재물손괴, 공익건조물파괴(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 중손괴
- 폭처법상 공동손괴
-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 손상, 그 외 지정문화재 손상

▣ 상습·누범·특수손괴

- 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 규정된 가중적 구성요건을 별도의 대유형

에 포섭

- 형법상 특수재물손괴, 특수공익건조물파괴
- 폭처법상 상습·누범·특수손괴, 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
- 문화재보호법상 특수손상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손괴죄를 범하여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여러 유형의 범죄를 하나의 대유형으로 포섭
 -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사
 - 문화재보호법상 특수손상등치상, 특수손상등치사
- 체포·감금범죄처럼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대유형을 나눌 경우 대유형이 지나치게 많아지므로 이를 하나로 통합

2) 일반적 기준/ 특별재산에 대한 손괴/ 상습·누범·특수손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4개 대유형 분류 (2안)

■ **일반적 기준**

- 형법과 특별법상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거나, 특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손괴범죄
 - 형법상 재물손괴, 공익건조물파괴(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 중손괴
 - 폭처법상 공동손괴

■ **특별재산에 대한 손괴**

-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손괴범죄에 대하여 가중된 법정형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대유형 설정

-
-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 손상, 그 외 지정문화재 등 손상

- 상습·누범·특수손괴

- 1안과 동일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안과 동일

3) 일반적 기준/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위반 - 3개 대유형 분류 (3안)

- 문화재보호법이 특수한 재물에 대한 손괴범죄를 규율하고 있으며, 포함하고 있는 구성요건이 다양하여 손괴죄의 유형분류와 맞추기 어렵다는 점, 일반적인 손괴죄와 법정형의 차이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대유형 설정

- 일반적 기준

- 대유형 분류를 단순화하기 위해 상습·누범·특수손괴 유형을 통합

- 형법상 재물손괴, 공익건조물파괴, 중손괴

- 폭처법상 공동손괴

- 형법상 특수재물손괴, 특수공익건조물파괴

- 폭처법상 상습·누범·특수손괴, 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사

- 문화재보호법위반

- 국가지정문화재 손상, 그 외 지정문화재 등 손상, 특수손상, 특수손상치상, 특수손상치사, 지정문화재 건조물 파괴

4) 검토 - 1안 채택

▣ 3안

- 특정의 특별법별로 별도의 대유형을 설정한 예가 없다는 점, 각 대유형 간 분류기준의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움

▣ 2안

- 특별재산에 대한 손괴를 별도의 대유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마련된 특별법의 취지 및 법정형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절도범죄, 방화범죄 양형기준과의 통일을 기할 수 있음
- 그러나 특별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범죄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밖에 없음에도, 이를 구분하기 위해 4개의 대유형을 둠으로써 유형분류가 다소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음

▣ 1안

- 대유형 분류를 상대적으로 단순화할 수 있으며, 각 대유형별 기준에 맞추어 형법 및 특별법 위반 범죄를 포섭하는 데 무리가 없음
- 장물범죄 양형기준 대유형 설정방식과 통일을 기할 수 있음

나. 중소유형 분류

0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등	3년 ↓			
2	공익건조물파괴	10년 ↓			
3	지정문화재손상 등	2년 ↑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3년↑			

▣ 폭처법상 공동손괴(4년6월↓)

● 1유형의 가중인자로 반영

- 폭력범죄 등에서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15년↓)

● 공익건조물파괴(형법 제36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

● 규정형식과 법정형을 고려할 때 2유형의 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

▣ 중손괴

● 재물손괴,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처벌(↑1년, 10년↓)

● 별도의 소유형으로 설정하는 방안(1안)

- 공익건조물파괴보다 법정형이 높으며, 재물손괴, 공익건조물파괴 범죄의 결과적가중범인 점 고려

● 공익건조물파괴와 동일한 소유형에 포섭하는 방안(2안)

- 공익건조물파괴와 상한이 동일한 반면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에 불과
 ⇨ 별도의 소유형으로 설정하더라도 사실상 공익건조물파괴 유형과 다른 형량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 고려

● 1, 2유형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방안(3안)

- 재물손괴(법정형 3년 이하)로 인한 중손괴의 경우 법정형은 높지만

사실상 그 죄질과 불법의 정도가 공익건조물파괴 범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임 ⇨ 형량의 적절한 균형 유지를 위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를 1, 2유형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검토(3안)

- 1안은 중손괴에 특유한 형량범위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 2안은 결과적가중범인 중손괴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채택하기 어려움
- 죄질과 불법의 정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3안이 타당

02 상습·누범·특수손괴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누범·특수손괴등	1년 ↑			
2	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	2년 ↑			
3	문화재특수손상	↑ 2년~45년 ↓ / ↑ 3년~45년 ↓			

■ 특수공익건조물파괴(1년 ↑)

- 1유형에 포섭

■ 문화재특수손상

-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한 범행일 경우 3년 이상 45년 이하, 그 외 지정문화재에 관한 범행일 경우 2년 이상 45년 이하로 법정형에 차이가 있으나,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소유형으로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 치상	1년 ↑			
2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 치사	3년 ↑			
3	문화재특수손상치상	무기, 5년 ↑			
4	문화재특수손상치사	사형, 무기, 5년 ↑			

▣ 문화재특수손상치상, 문화재특수손상치사

- 두 범죄의 징역형의 법정형은 동일하나, 치사범죄 법정형에 사형을 규정하여 결과불법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해 형량범위에 차등을 둬

IV. 형량범위

1. 일반적 기준

가. 재물손괴등

▣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6	18	24	30	36			42
재물손괴	수	3	6	55	1	80	0	17	0	6	5	1	0	1	0	0	0	0	175	5.81
	비율	1.7	3.4	31.4	0.6	45.7	0.0	9.7	0.0	3.4	2.9	0.6	0.0	0.6	0.0	0.0	0.0	0.0	100.0	

▣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범죄 양형기준

- 협박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 8월	2월 - 1년	4월 - 1년6월

● 유기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유기·학대	- 8월	2월 - 1년	6월 - 1년6월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 검토

● 기본영역 : 4월-10월

- 평균형량이 5.81월로 낮고, 징역 4월에 31.4%, 징역 6월에 45.7%가 집중분포되어 있음. 징역 8월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형량분포가 급격히 하강
- 하한은 평균형량보다 낮게 징역 4월로, 상한은 형량분포를 감안하여 징역 10월로 설정

● 감경영역 : 6월 이하

- 기본영역 하한과의 중첩구간을 고려

● 가중영역 : 8월-1년6월

- 하한은 기본영역 상한과의 중첩구간 고려
- 상한은, 형량분포(실무상 가장 중하게 선고된 사건이 징역 1년6월로 1건에 불과),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범죄 양형기준에서 가중영역 상한이 1년6월로 설정되어 있는 점 등 고려

나. 공익건조물파괴

- ▣ 실무례가 없어 규범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음
- ▣ 죄질 및 법정형이 유사한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용물무효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2	공용물파괴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 공익건조물파괴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공용물무효(7년 이하 징역)보다는 높고 공용물파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보다는 하한이 낮음
- ▣ 공용물무효보다는 높게, 공용물파괴보다는 낮게 설정
 - 공용물무효, 공용물파괴 유형은 1/2 가중 규정이 있는 특수공무방해(형법 제144조 제1항) 조항까지 포섭된 것이며, 특히 공용물파괴의 형량범위는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있음
 ⇨ 공익건조물파괴의 형량범위를 기본적으로 공용물파괴보다는 낮게 설정하는 것이 전체 균형에 맞음
- ▣ 기본영역 : 8월-2년
- ▣ 감경영역 : 4월-1년
- ▣ 가중영역 : 1년6월-4년
 - 공익건조물파괴죄의 보호법익, 법정형 상한, 아래에서 살펴볼 ‘지정문화재손상 등’의 가중영역 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4년으로 정함

다. 지정문화재손상 등

-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은 지정문화재 손상, 은닉과 지정문화재

절취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2년 이상 징역)

- ▣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의 문화재절취를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에 포섭하여 아래와 같은 형량 권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치가 높은 재산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 ▣ 동일한 조항에서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
 - 2009년 이후 선고된 4건의 사례에서 징역 1년과 징역1년6월이 선고되었으나, 법정형 하한을 고려해 규범적 상향 필요
- ▣ 감경 : 1년-2년6월, 기본 : 1년6월-3년, 가중 : 2년6월-4년

라. 국가지정문화재손상 등

-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재 손상, 은닉과 국가지정문화재 절취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3년 이상 징역)
- ▣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의 문화재절취를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포섭하여 아래와 같은 형량 권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 ▣ 동일한 조항에서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
 - 절도죄와 손괴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손괴보다 절도를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문화재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손괴와 절도범죄는 불법의 정도에서 달리 취급하기 어려움

▣ 감경 : 1년6월-3년, 기본 : 2년-4년, 가중 : 3년-6년

마. 소결

01 일반적 기준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등	3년 ↓	-6월	4월-10월	8월-1년6월
2	공익건조물파괴	10년 ↓	4월-1년	8월-2년	1년6월-4년
3	지정문화재손상 등	2년 ↑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6월-4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3년 ↑	1년6월-3년	2년-4년	3년-6년

2. 상습·누범·특수손괴

가.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통계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6	18	24	30	36			42
폭처법 (상습재물손괴등)	수	0	0	0	0	5	0	4	0	0	1	1	0	0	0	0	0	0	11	8.00
	비율	0.0	0.0	0.0	0.0	45.5	0.0	36.4	0.0	0.0	9.1	9.1	0.0	0.0	0.0	0.0	0.0	0.0	100.0	
폭처법 (집단·흥기등손괴)	수	0	0	0	0	19	0	6	0	1	3	0	0	2	0	0	0	0	31	7.87
	비율	0.0	0.0	0.0	0.0	61.3	0.0	19.4	0.0	3.2	9.7	0.0	0.0	6.5	0.0	0.0	0.0	0.0	100.0	
폭처법(집단·흥기)	수	0	0	4	0	131	0	60	1	12	27	0	0	1	0	0	0	0	236	7.43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6	18	24	30	36		
등재물손괴등)	비율	0.0	0.0	1.7	0.0	55.5	0.0	25.4	0.4	5.1	11.4	0.0	0.0	0.4	0.0	0.0	0.0	100.0	
합계	수	0	0	4	0	155	0	70	1	13	31	1	0	3	0	0	0	278	7.50
	비율	0.0	0.0	1.4	0.0	55.8	0.0	25.2	0.4	4.7	11.2	0.4	0.0	1.1	0.0	0.0	0.0	100.0	

- 평균형량 7.5월
- 징역 6월(55.8%), 징역 8월(25.2%)에 대부분의 사건 집중, 징역 1년(11.2%)에 일정수의 사건이 분포하고, 가장 높은 형은 징역 1년6월로 3건이 선고됨

▣ 법정형(1년 이상 징역)이 동일한 유사범죄 양형기준

- 상습·누범·특수폭행 / 상습·누범·특수협박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상습·누범·특수폭행	4월 - 1년2월	6월 - 1년10월	8월 - 2년4월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상습·누범·특수협박	4월 - 1년	6월 - 1년6월	8월 - 2년

▣ 기본영역 : 8월-1년6월

- 징역6월에 과반수의 사건이 분포되어 있으나,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하한을 기본영역 하한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음
⇒ 규범적 상향 차원에서 하한을 8월로 정함
- 실무례 중 가장 높게 선고된 형인 1년6월을 상한으로 설정

▣ 감경영역 : 4월-10월

- 통계 중 가장 낮은 형인 4월을 하한으로 설정

- 상한을 1년으로 정할 경우 98.9%의 사건이 감경영역에 포함 ⇨ 상한은 징역 10월로 정함

▣ 가중영역 : 1년-2년

- 형량분포, 기본영역과의 적정한 중첩구간 설정 등 고려 하한을 1년으로 정하고, 상습·누범·특수협박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상한을 2년으로 설정

나. 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

- ▣ 실무례가 없어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규범적으로 형량범위 설정
- 법정형(2년 이상 징역)이 동일한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의 양형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함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6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다. 문화재특수손상

▣ 법정형

- 지정문화재손상(2년 이상 징역), 국가지정문화재손상(3년 이상 징역) 법정형 상한의 1/2 가중
 - 지정문화재특수손상 : 2년-45년
 - 국가지정문화재특수손상 : 3년-45년

- ▣ 아래 지정문화재손상, 국가지정문화재손상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지정문화재특수손상, 국가지정문화재특수손상을 포괄하는 하나의 형량범위 설정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3	지정문화재손상 등	2년 ↑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6월-4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3년 ↑	1년6월-3년	2년-4년	3년-6년

■ 기본영역 : 2년-4년

- 법정형 하한이 더 높은 국가지정문화재손상을 기준으로 형량범위 설정

■ 감경영역 : 1년-3년

- 감경영역에서는 법정형이 더 낮은 지정문화재특수손상의 작량감경한 하한을 고려하여 지정문화재손상 유형처럼 1년을 하한으로 정하되, 상한은 국가지정문화재손상의 상한을 참고하여 3년으로 설정

■ 가중영역 : 3년-7년

- 기본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손상의 형량범위를 참고하되, 문화재특수손상의 법정형 상한이 가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 상한을 7년으로 조정

라. 소결

02 상습·누범·특수손괴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1년 ↑	4월-10월	8월-1년6월	1년-2년
2	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	2년 ↑	6월-2년	1년-3년	2년-4년
3	문화재특수손상	↑ 2년~45년 ↓ / ↑ 3년~45년 ↓	1년-3년	2년-4년	3년-7년

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 통계

- 평균형량 10.85월
- 징역 6월부터 징역 2년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6	18	24	30	36			42
재물손괴치상	수	0	0	0	0	3	0	3	0	3	2	1	0	1	1	0	0	0	14	10.85
	비율	0.0	0.0	0.0	0.0	21.4	0.0	21.4	0.0	21.4	14.2	7.1	0.0	7.1	7.1	0.0	0.0	0.0	100.0	

▣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 양형기준

● 중상해, 체포·감금치상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중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상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 기본영역 : 10월-2년

- 평균형량이 10.85월인 점, 징역 10월에 21.4%의 사건이 분포되어 있는 점 등 고려 ⇨ 하한을 징역 10월로 정함
- 상한은 유사범죄 양형기준 참고하여 징역 2년으로 설정

▣ 감경영역 : 6월-1년

- 징역 6월 미만의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점, 유사범죄 양형기준 참

고하여 하한을 징역 6월로 설정

- 징역 1년 이내가 78.5%를 차지하는 점 고려 ⇨ 상한을 징역 1년으로 정함

■ **가중영역 : 1년6월-3년**

- 기본영역 상한과의 중첩범위, 실무례 중 가장 중한 선고형이 징역 2년인 점, 유사범죄 양형기준 등 고려하여 형량범위 설정

나.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사

- 실무례 없어 법정형(3년 이상 징역)이 동일한 유사범죄 양형기준 참고

- **상해치사/ 폭행치사/ 체포·감금치사**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상해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폭행치사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사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사의 경우 상해치사보다는 죄질이 가볍고, 폭행치사, 체포·감금치사와 죄질이 비슷하다고 보임 ⇨ 기본적으로는 폭행치사, 체포·감금치사 양형기준을 참조

- 다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결과불법을 반영하여 기존의 양형기준 설정관행보다 엄정한 형량을 권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익건조물파괴치사의 경우 다중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범죄인 점, 아래 문화재특수손상치사 형량범위와의 균형(재물손괴/

공익건조물파괴치사의 법정형이 문화재특수손상치상의 법정형보다 낮지만 결과불법은 더 높음) 등을 고려하여 기본영역 상한과 가중영역 상하한은 상해치사 양형기준을 참조해 설정

- 감경 : 1년6월-3년, 기본: 2년-5년, 가중: 4년-7년

다. 문화재특수손상치상

- ▣ 실무례 없어 규범적으로 형량범위 설정
- ▣ 법정형(무기, 5년 이상 징역) 동일한 ‘치상’ 범죄 양형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1년

- 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피약취·유인미성년자 상해등/인질상해·치상	2년6월 - 4년6월	4년 - 6년	5년 - 8년

-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치상/ 강간치상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 문화재특수손상치상의 죄질은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피약취·유인미성년자 상해, 강간치상 범죄들보다는 낮다고 봐야 함
- ▣ 기본적으로 13세 이상 강제추행치상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되, 기본영역 상한을 법정형의 하한과 일치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기본영역 상한과 가중영역 상하한을 상향 조정

- 감경 : 2년6월-4년, 기본 : 3년-6년, 가중 : 5년-8년

라. 문화재특수손상치사

- 실무례 없어 규범적으로 형량범위 설정
- 법정형이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으로 동일한 범죄 양형기준
 -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 판매로 사망의 결과 발생한 경우(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3호)
 - 식품·보건범죄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5유형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0년

- 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도주(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4유형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4	치사 후 유기도주 (유기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 치사 후 유기도주 유형의 경우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형량범위가 낮게 설정되어 있음
- 법정형에 사형을 규정하여 엄정한 처벌을 하고자 한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5유형의 형량범위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5유형처럼 감경영역 형량범위를 ‘4년-7년’ 으로 할 경우 기본영역과의 중첩범위가 너무 넓고 사안에 따라 유연한 양형을 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감경영역을 ‘3년-6년’ 으로 조정

- 감경 : 3년-6년, 기본 : 5년-8년, 가중 : 7년-10년

마. 소결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 치상	1년 ↑	6월-1년	10월-2년	1년6월-3년
2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 치사	3년 ↑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3	문화재특수손상치상	무기, 5년 ↑	2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4	문화재특수손상치사	사형, 무기, 5년 ↑	3년-6년	5년-8년	7년-10년

4.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정리

01 일반적 기준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 등	3년 ↓	-6월	4월-10월	8월-1년6월
2	공익건조물파괴	10년 ↓	4월-1년	8월-2년	1년6월-4년
3	지정문화재손상 등	2년 ↑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6월-4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3년 ↑	1년6월-3년	2년-4년	3년-6년

02 상습·누범·특수손괴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1년 ↑	4월-10월	8월-1년6월	1년-2년
2	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	2년 ↑	6월-2년	1년-3년	2년-4년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3	문화재특수손상	↑ 2년~45년 ↓ / ↑ 3년~45년 ↓	1년-3년	2년-4년	3년-7년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 치상	1년 ↑	6월-1년	10월-2년	1년6월-3년
2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 치사	3년 ↑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3	문화재특수손상치상	무기, 5년 ↑	2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4	문화재특수손상치사	사형, 무기, 5년 ↑	3년-6년	5년-8년	7년-10년

V. 양형인자

1.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

- ▣ 과거 판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형인자 추출
- ▣ 손괴범죄가 폭력범죄를 수반하거나 폭력성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폭력범죄, 체포·감금범죄의 양형기준을 주로 참조하되, 재산범죄의 속성과 관련해서는 절도범죄 등 다른 재산범죄의 양형기준도 참조

2. 일반적 기준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미필적 고의로 손괴 행위를 저지른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3,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2유형)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1,2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아자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2유형)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특별감경인자에 대한 검토

1) 특별감경인자(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폭력, 체포·감금, 절도범죄 양형기준 등 참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체포·감금, 폭력, 공갈, 사기, 절도 등 범죄에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였고, 손괴범죄 실제 사례에서도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감경한 경우가 있음
- 체포·감금범죄의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였고, 폭력 등 나머지 범죄에서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등 범행동기와 관련된 양형요소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 범행동기 중 특별한 것을 따로 떼어내어 특별감경인자로 두는 방식보다는 실제 사례에서 다양한 범행동기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

하여 포괄적으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로 규정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

■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고의의 측면에서 감경요소로 규정
- 폭력, 체포·감금, 사기 등의 양형기준에서 미필적 고의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
-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행위불법이 상당 정도 약해지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삼는 것이 바람직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비용이 들지 않거나 적은 비용으로 원상회복 등이 가능할 정도로 실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작은 경우
 - 물질적 훼손이 수반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감정상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가 경미한 경우는 결과불법이 낮으며, 실제 많은 사례에서도 감경요소로 고려되고 있음

■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3, 4유형)

- 정의규정
 - 처음부터 대상 물건이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 2항 소정의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외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손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위 국가지정문화재 등이 일반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범행 과정 중 우연히 대상 물건이 국가지정문화재 등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절도범죄 양형기준 참조
- 위 양형인자는 손괴범죄 객체에 관한 주관적 요소를 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로 손괴 행위를 저지른 경우’의 인자와 중복되지 않음

2)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거의 모든 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 인자)로 규정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의 정의규정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폭력범죄 양형기준 등 참조
- 손괴범죄는 기본적으로 재산범죄이므로, 처벌불원에 이르지 않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 금액을 공탁하거나,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경우에는 이를 영향력 있는 감경요소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 특별가중인자에 대한 검토

1) 특별가중인자(행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제외

●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적인 상해, 폭행, 협박범죄 양형기준 및 체포·감금 범죄의 일반적 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유형에서 위 인자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경우 ‘상습·누범·특수손괴’ 유형과 사이에 형량역전 현상이 발생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지 않기로 함

- 예컨대, 지정문화재손상 유형(일반적 기준 3유형)에서 ‘단체·다중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의 가중인자가 적용될 경우 가중영역(2년6월-4년)으로 가게 되고, 국가지정문화재손상 유형(일반적 기준 4유형)에서 동일 인자가 적용될 경우 역시 가중영역에 포섭되어 3년-6년의 형량범위가 적용되는 데 반해, 동일 사안이 문화재특수손상죄(상습·누범·특수손괴 3유형)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높음에도 더 낮은 형량범위(기본영역 : 2년-4년)가 적용되게 됨

- 재물손괴등 유형(일반적 기준 1유형)에서 ‘단체·다중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의 가중인자가 적용될 경우의 형량범위(가중영역 : 8월-1년6월)와 동일 사안이 특수손괴죄(상습·누범·특수손괴 1유형)로 처벌받을 경우의 형량범위(기본영역 : 8월-1년6월)가 동일해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적인 상해, 폭행, 협박범죄 양형기준 및 체포·감금범죄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를 모두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단체·다중에 의한 범행 등에 대하여 주모자와 그렇지 않은 공범의 가벌성 차이를 반영할 필요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2유형)

● 정의규정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등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 2항 소정의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외 지정 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손괴범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절도범죄 양형기준 참조

- 다만, 절도범죄의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 그러나 피해가 중한 것 뿐 아니라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까지를 특별가중인자로 요구하게 되면, 피해가 중하지만 공탁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에 대한 감안 없이 처음부터 특별감경인자로만 고려되어 부당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를 삭제

■ 절도죄 양형기준은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어 위와 같은 모순이 생기지 않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폭력, 체포·감금, 사기, 공갈 등 범죄에서 위 인자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행하는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 등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폭력범죄, 체포·감금 범죄, 방화범죄 등에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손괴죄는 폭력성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폭력범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재물의 훼손이라는 점에서는 방화범죄와도 유사한 면이 있으므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협을 발생하게 한 경우(1,2유형)

- 중손괴(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형량의 적정한 균형 유지를 위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협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1, 2유형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형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해 모든 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라. 일반감경인자에 대한 검토

1) 일반감경인자(행위)

▣ 소극가담

- 정의규정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폭력, 체포·감금, 절도범죄 등 다른 범죄의 예에 따라 일반감경인자로 규정

2) 일반감경인자(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다른 범죄의 예에 따라 일반감경인자로 규정

마. 일반가중인자에 대한 검토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폭처법상 공동손괴 가중규정을 고려하여 폭력범죄 등에서처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2유형)

- 정의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94조 소정의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을 파괴한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이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에 대한 파괴범죄에 대해 공익건조물파괴(형법 제36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 점을 고려

■ 계획적인 범행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폭력범죄 등의 예에 따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

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한 처리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인자 적용에 관한 특별규정을 둠

- 살인, 성범죄, 폭력, 공갈, 체포·감금범죄의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범행의 경우 처리에 관한 부가규정을 두고 있음

-
- 손괴범죄의 경우도 폭력범죄가 수반되거나 폭력성이 발현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폭력범죄 양형기준 등과 동일한 처리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손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누범·특수손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상습·누범·특수손괴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2유형)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지정문화재를 손괴한 경우(3유형)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특별양형요소에 대한 검토

1) 특별감경인자

- ▣ 일반적 기준 양형인자에서 ‘미필적 고의로 손괴 행위를 저지른 경우’ 를 제외
- 상습·누범·특수손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안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

2) 특별가중인자

- ▣ 일반적 기준 양형인자들 중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협을 발생하게 한 경우(1,2유형)’ 만 제외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는 폭력, 체포·감금 양형기준 등에서는 상습·누범·특수유형에서 가중인자로 반영하지 않았음
 - 상습·누범·특수유형의 형량범위가 높아 형량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손괴범죄의 경우는 오히려 형량의 균형을 위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
 - 예컨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손괴범죄를 저지른 주모자가 있는 경우에 일반손괴로 기소되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의 특별가중인자 2개가 적용되어 형량범위가 ‘8월-2년3월’ 로 특별조정
 - 반면에 특수손괴로 기소되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의 인자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영역 형량범위 ‘8월-1년6월’ 이 적용됨

다. 일반양형요소에 대한 검토

1) 일반감경인자

- ▣ 일반적 기준 양형인자와 동일

2) 일반가중인자

- ▣ 국가지정문화재를 손괴한 경우(3유형)

- 국가지정문화재특수손상(3년 이상 45년 이하)과 그 외 지정문화재 등 특수손상(2년 이상 45년 이하)의 법정형 차이를 반영

4.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경미한 상해(1, 3유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1, 3유형)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 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2유형)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1, 3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적인 범행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1,2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특별양형요소에 대한 검토

1) 개요

- 재물손괴의 기회에 상해, 사망 등 신체침해 결과로 나아간 점에 대한 불법을 법정형에 크게 반영한 유형
- 따라서 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 정도와 관련한 요소, 미필적 고의,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 의도 여부 등 손괴범행에 대한 주관적 의사에 관한 요소 등은 양형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2)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1,3유형)

- 정의규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폭력, 체포·감금 범죄 등의 예에 따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1,3유형)

- 성범죄, 강도범죄, 체포·감금범죄 등의 예에 따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4유형)

- 정의규정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성범죄, 방화범죄, 체포·감금 범죄 등에도 동일한 양형인자가 반영되어 있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적 기준, 상습·누범·특수 손괴 유형에서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그러나 재물손괴에 그치지 않고 상해, 사망 등 신체를 침해하는 결과로 나아간 이상 ‘상당부분 피해회복’ 이라는 양형요소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는 제외
 - 체포·감금범죄 양형기준 설정 당시 전문위원회의에서 ‘상당부분 피해회복’ 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신체 침해 범죄에 대해 피해회복을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데 결론이 모아진 바 있음

3) 특별가중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2유형)

- 재물손괴, 공익건조물파괴의 치상/치사 범죄의 경우 법정형도 높으며, 행위태양의 위험성에 따른 비난가능성을 가중적 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성 높음

▣ 중한 상해(1,3유형)

- 정의규정
 -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살인범죄 양형기준 및 체포·감금범죄 양형기준과 같이 “치료기간이 약 4주~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라는 부분은 삭제

VI. 집행유예 기준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손괴로 인한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단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은 제외) ○ 경미한 상해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 손괴범죄의 양형인자표상의 양형요소와 유사 범죄군인 절도범죄 양형기준, 폭력범죄 양형기준 및 체포·감금 양형기준 등을 참고